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1975. 4.10.
개정 2001. 6.12.
개정 2002. 6. 1.
개정 2004. 6.10.
개정 2004. 9.23.
개정 2012. 6. 8.
개정 2016. 4.16.
개정 2016.10.27.
개정 2017. 3.24.
개정 2022. 4.20.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 25 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회장) 및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선임하고 집행임원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장 구 성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 22 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장) ① 이사회 의장(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② 이사회 의장(회장)이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 6 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최소 분기 1 회 본사에서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회장)이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의장(회장)이 유고시는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회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7 일 전에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제 9 조 (의결방법) ① 이사회 의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관계인의 의견청문 및 공시책임자의 배석) ①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및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 공시책임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들을 결의한다.

1. 신주식 발행사항의 결정
2.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의 발행
3. 우선주식의 우선배당을 결정
4. 신주배정에서 발생된 단수주의 처리
5.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6. 주식명의개서대리인 선임, 해임, 사무취급장소, 대행업무범위결정

7.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및 소각
8.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등의 상장 결정
9. 유상증자시 실권주식의 처리
10. 주주총회의 소집
11. 분기배당

② 이사회는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다음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이사회 의장(회장)의 선임
2.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의 선임
3.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경업, 동업 타사의 임원 겸임의 승인
4. 이사 또는 집행임원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5.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임기 등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해임
7. 이사회 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의 개폐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하여 주주총회에 부의를 결정한다.

[주총 보통결의 사항]

1. 영업보고서의 승인
2. 이사의 선임
3. 주식배당의 결정
4. 이사의 보수

[주총 특별결의 사항]

5. 정관의 변경
6. 주권의 액면분할의 결정
7. 자본감소
8.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신청 또는 해산결의(정관 제 20 조제 2 항에 의거, 출석주주 85%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 필요)
9.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10.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11.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2. 이사의 해임
13.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4. 합병 계약서의 승인,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④ 이사회는 주요 경영에 관한 다음 사항들을 결정한다.

[경영일반]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3. 중요한 자본도입, 기술도입, 기술이전 또는 기술제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재무관련]

4. 자산재평가 실시 결의
5. 자기자본 2.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의 결정
* 채무보증: 입찰, 계약, 하자,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함.
6. 자기자본 2.5% 이상의 채무인수, 채무면제 결정
7. 자기자본 5.0% 이상의 차입 결정
8. 자기자본 2.5%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결정
9. 자기자본 2.5% 이상의 증여 결정
10. 중대한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11. 재무제표의 승인(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는 경우)

[투자관련]

12. 자기자본 5.0%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
 13. 자기자본 2.5%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결정
 14. 자기자본 2.5% 이상의 해외직접투자*의 결정
* 현지법인의 시설투자 및 자회사 설립을 위한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액 포함
 15.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 이상의 고정자산 취득 또는 처분 결정
- ⑤ 이사회는 다음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2.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이사회 의장(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타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12 조 (긴급집행) ① 이사회 결의사항 중 제 11 조 제 2 항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이외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집행임원이 사전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 13 조 (위임)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위임이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집행임원 또는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위원회) ①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이사회 의장(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④ 이사가 위원회의 결의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제 3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가 정해진 권한 내에서 한 결의에 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의할 수 없다.
- ⑤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8 조(소집절차), 제 9 조(의결방법), 제 17 조(의사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고문 등의 추대) 이사회는 그 결의에 의하여 고문 또는 상담역을 추대할 수 있다.

제 16 조 (집행임원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이사회는 각 집행임원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집행임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별표)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8 조 (이사회 지원)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 모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전담간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전담간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정본은 비치용으로 보관하고 부분은 이사회 의장(회장)이 따로 지정하는 곳에 보관한다. 전담간사의 배치가 없을 경우에는 기획담당 임원이 대신한다.

제 19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세칙)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본 규정의 시행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②(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이사회 의사록 (제 17 조 관련)

이사회 의사록

1. 일 시 :
2. 장 소 :
3. 이사총수 ○○ 명 중 참석이사수 ○○명
4. 의사경과

5. 부의안건 :

6. 결의사항 :

상기 안건을 결의(승인)함.

구 분	성 명	기명날인
의 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